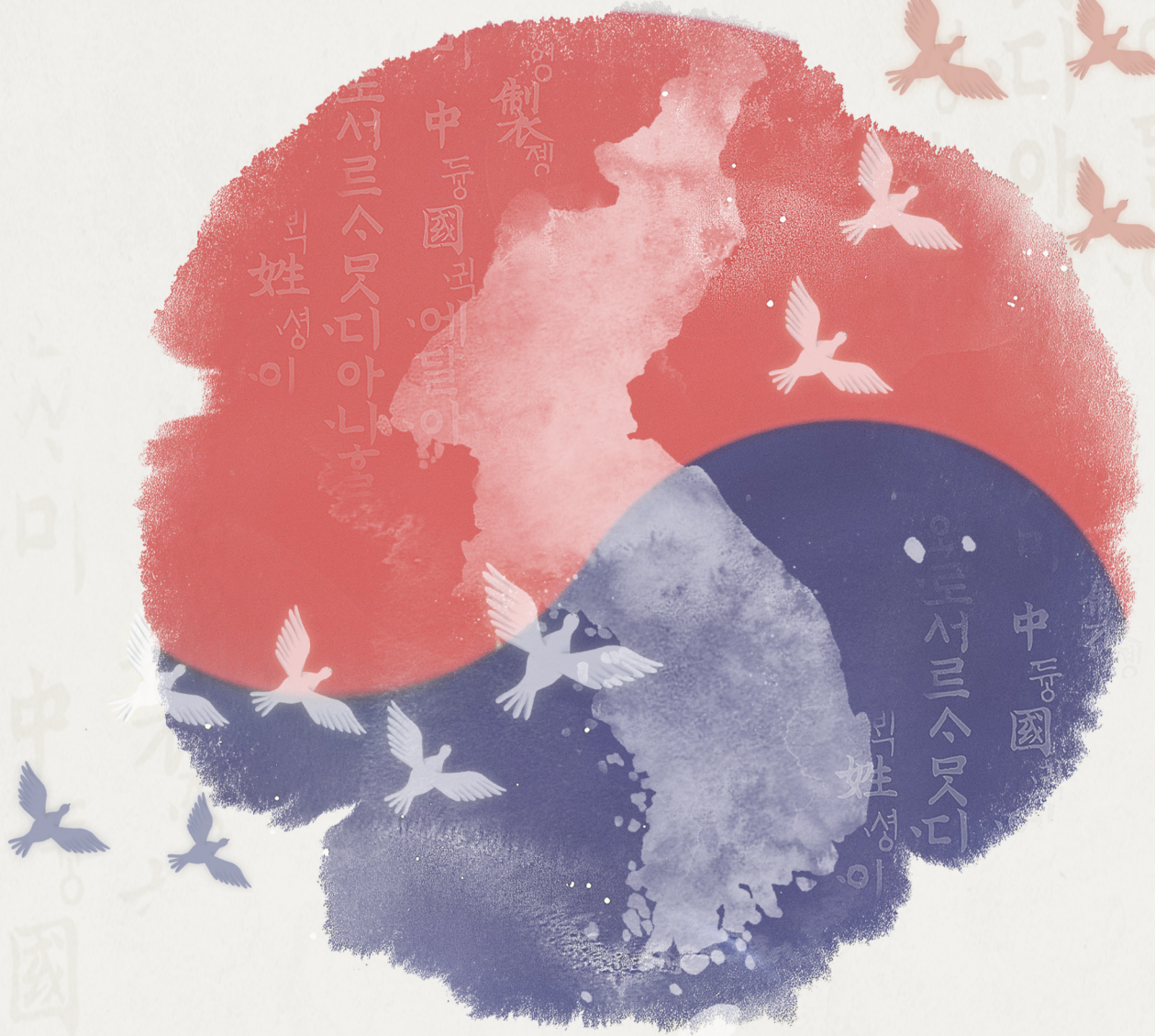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실태와 대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2025 인권포럼

북향여성의 인권 실태와 대안

Program

10:00 ~ 10:30 개회식

개회사 이용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영사 은희곤 이사장 (사)평화드림포럼

전수미 이사장 (사)화해평화연대

축사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10:30 ~ 11:30 주제발제

좌장: 이형규 연구실장 (평화드림포럼)

발제1. 북향여성의 인권

전수미 교수 (송실대학교)

발제2. 북향여성의 인권과 UN

강운주 법무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발제3. 북향여성의 가정

최현옥 실장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

발제4. 북향여성의 인권과 경제

백영숙 단장 (파주시 북한이탈주민협회)

11:30 ~ 12:00 종합토론 및 폐회

좌장: 전수미 교수 (송실대학교)

토론1. 김수연 전문연구원 (송실대 평화통일연구원)

토론2. 서경화 회장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폐회사 은희곤 이사장 (평화드림 포럼)

개회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실태와 대안 인권 포럼"을 준비해 주신 (사)평화드림포럼과 (사)화해평화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실태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90년대 말 이래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 한국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3만 5천여 명이 우리 곁에 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입국자의 9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 때문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부양의 책무를 홀로 떠안은 가장으로, 남녀평등이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탈북의 과정에서 겪은 상상하기 힘든 고난,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취업과 주거, 자녀 교육의 벽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12주 교육, 주거 알선, 정착금 지원만으로 그분들의 자립을 다 보장했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곧 북한 이탈여성들의 영원한 조국이자 의지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들의 권리와 삶을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연구와 실천을 이어온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과, 이웃 국가의 깊은 시선까지 함께 나눕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이 겪는 구체적인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말뿐이 아닌 실질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탈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오길 잘했다, 여기 뿌리를 내리고 살자”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환대와 사랑으로 연대하는 성숙한 공동체, 진정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일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현실을 바꾸는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2025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

환영사



(사)평화드림포럼 이사장 은희곤

존경하는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님, 이용선 국회의원님 그리고 (사)평화드림포럼, (사)화해평화연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북한이탈주민(이후 북향민) 중 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착한 35,000여 북향민들 중 2000년 이후 정착한 여성들은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한 가구의 가장으로서 주거, 보건, 일자리, 교육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문제, 자녀 교육 문제, 성 불평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의식과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신 전수미 숭실대학교 교수님, 최현옥 남북하나재단 최연옥 실장님, 백영숙 파주 북한이탈주민 협회 단장님, 강운주 UN인권사무소 법무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도록 북향주민들과 함께 해오며 느꼈던 경험과 지혜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함께 나누며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서경화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님과 김수연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의 전문연구원님께서도 중요한 코멘트를 통해 북한이탈 여성들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한반도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일을 염원해 왔지만 동시에 남북은

거친 언사와 불신으로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통일로서 북
향주민은 통일이후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북향여성들
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분단된 우리 민족이 진정한 통일 공동체로 나
아갈 때 겪게 될 현실적 문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
니다.

모든 문제 파악과 해결의 실천은 '북향여성들의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는 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답을 찾
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라면 북향여성들은 계속 '대상'이 될 뿐
입니다. 북향여성들과 우리들은 서로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한국 사
회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북향여성들입니다. 우리 사회나 북향여성들이나
서로가 '일방적'(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관계)이어야 합니다. '함께' 건강한 상
호관계성 아래 '우리'를 만들어가는 단초들을 찾고 '함께' 씨름하는 자리가 오늘 이
포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북향여성들과
가족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사)평화드림포럼 이사장 은희곤

환영사



(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전수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전수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국회의원님, 각국 대사님과 외교 사절단 여러분,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현장의 활동가 여러분. 오늘 “2025 인권포럼: 북향 여성의 인권 실태와 대안”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화해평화연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포럼은 특별히 대한민국, 즉 남한 사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향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주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낙인적 표현인 ‘탈북자’라는 호칭 대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적 시민이라는 의미를 담아 “북향민”이라는 이름을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북향 여성들의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해결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북향 여성들은 탈출 과정에서 인신매매, 강제 결혼, 성 착취, 가족 해체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과 노동, 가정과 교육, 종교와 지역 공동체 속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며, 의료·법률·정신건강 지원체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도 큰 장벽을 경험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바로 이러한 정착 이후의 인권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국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제가 북향 여성의 인권 현실 전반을 소개하고, 강운주 법무관(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 국제사회의 역할을, 최현옥 실장(남북하나재단)이 가정과 공동체 문제를, 그리고 백영숙 단장(파주시 북한이탈주민협회)이 경제적 도전과 과제를 다

루게 됩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의 김수연 연구원과 북한기독교총연합회의 서경화 회장께서 중요한 통찰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포럼은 이용선 국회의원실과 (사)평화드림포럼, (사)화해평화연대가 함께 주최합니다. 오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되는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 국내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북향 여성의 인권 보장은 인도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인권 규범의 준수와 동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가 축적해 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책적·시민적 노력들이 연결될 때, 북향 여성들의 삶은 한층 안전하고 존엄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해평화연대는 학문과 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논의와 제안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남한에 거주하는 북향 여성들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희망의 길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전수미

축사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Ambassador Georg Schmidt,
Germ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Congratulatory Message

It is with great respect that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is important event dedicated to highlighting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women who have successfully fled to South Korea.

This event represents not only a space of dialogue but also a beacon of solidarity and hope. The stories of these women are marked by extraordinary courage. In leaving behind a society where freedom is restricted, they faced perilous journeys, across dangerous borders, with the constant threat of arrest, exploitation, or forced repatriation. Their resilience in the face of hunger, isolation, and fear is nothing short of inspiring.

Yet, even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new challenges emerge: navigating an unfamiliar society, overcoming cultural barriers, and rebuilding lives while carrying deep psychological scars. Many continue to struggle for

economic security, education, and full acceptance in their new communities.

This experience also speaks to the broader reality faced by women in conflict and crisis worldwide. Too often, women bear the heaviest burdens of insecurity, displacement, and marginalization. In this context, the principle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re highly relevant: they remind us of the essential role women play in building peace, advancing human rights, and shaping inclusive societies.

Your commitment to shining a light on these realities helps amplify their voices and fosters greater understanding and compassion. May this event inspire us to work together with even greater commitment to support the dignity, rights, and empowerment of all women who seek freedom and a future of their own choosing.

September 30th, 2025

Ambassador Georg Schmidt

Germ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의 상황을 조명하는 이 중요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과 참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대화의 장을 넘어 연대와 희망의 등불을 상징합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비범한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된 사회를 떠나면서 그들은 위험천만한 여정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험난한 국경을 넘는 동안 체포, 착취, 또는 강제 송환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굶주림과 고립 그리고 두려움을 견뎌낸 그들의 회복력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낯선 사회를 헤쳐 나가며,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깊은 심리적 상처를 안은 채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경제적 안정, 교육,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온전한

인정을 받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또한 전 세계 분쟁과 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더 큰 현실을 보여줍니다. 너무 자주 여성들은 불안정, 이주, 소외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여성, 평화, 안보’의 원칙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원칙들은 여성들이 평화 구축, 인권 증진, 포용적인 사회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명해 주시는 여러분의 헌신은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자유와 자신이 선택한 미래를 추구하는 모든 여성들의 존엄과 권리, 그리고 권한 부여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큰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9월30일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발제1.북향여성의 인권과 현실

전수미 교수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1. 북향여성 정착과정 개괄

보호 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 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 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
----- 국내 입국 -----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의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 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 보호 결정 세대 단위 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 거주지 전입 -----	
거주지 보호(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 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 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 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향민 전문상담사 86명(정원기준)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그림 2> 북향여성 국내정착 프로세스

“출처 :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15면.”

북향여성의 전체적인 정착과정을 보면, “북향여성의 탈북 → 중국 체류 → 제3 국 가 밀입국 → 제3국 국경경비대에 체포 → 제3국 이민국 감옥으로 이송 → 북향민이 제3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호 요청 → 출발지 재외공관에서 여행 증명서 발급 → 국내 입국 → 합동신문(2-3개월) → 보호 결정 → 초기적응교육(12주, 하나원) → 거주지 보호(5년)”으로 진행된다.

2. 북향여성의 제3국으로부터의 입국 전 문제

1) 제3국 브로커 문제

북향여성이 제3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브로커의 성폭행 문제가 종종 발생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서 탈북 도중 브로커에게 강간을 당한 북향여성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못 하고 집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 보니 옷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을 보고 브로커가 저에게 따라오라고 해 따라갔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데리고 가서 어느 아파트로 올라가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몇 개 주면서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가라 했어요…. 너무 춥고 망신스러워서 울었어요…”¹⁾

북향여성이 북한이나 중국을 탈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거나 교회의 지원으로 무료로 탈북을 하게 된다. 브로커는 거의 남자이고 북한여성은 탈북이라는 궁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북향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브로커는 북·중 국경 지역과 중국 내 현지인 브로커, 한국 내 브로커로 구성되는데 이 중 중국 현지인 브로커가 탈북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향민이 대한민국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법무부와 외교부, 통일부는 ‘북향민 안전이송 대책반’을 적극 활용하여 악성 브로커로부터 북향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2) 재외공관의 보호문제

다음으로 제3국 체류 북향여성들이 대한민국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국 경찰에 체포 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제7조는²⁾ 재외공관장에

1) 2020. 8. 20., 북향여성 인터뷰 증언 중.

게 직접 보호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제3국 북향여성들이 “살려주세요. 저 OO에서 잡혔어요.”라고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북향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교부는 “데리러 갈 수 없습니다. 공관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¹⁾.

북향여성이 대한민국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국에 체포되었다는 정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입수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온 상당수 북향민들은 주중공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경우 외교부에서 “바빠서 위기에 처한 북향민을 도울 수 없다”고 대응하였다며 많은 항의를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북향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유무선 조치를 취하고 사후 보고하여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북향민이 생사의 경계에서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국 체포 시 상황을 기록하고, 패턴을 파악하여 ‘재외공관의 북향민 대응 매뉴얼’을 보다 자세하고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3) 국내 입국과정 상의 문제

다음으로, 제3국 체류 북향여성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북향여성들이 남한으로 오기위해 위·변조 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출발지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고 있다. 이때에는 국민과 동일한 절차로 입국심사를 하며, 국정원 직원이 인솔한다. 다만 북향민 중에 제3국에서 발급한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할 때가 문제가 된다. 외국인인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나, 북향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위 법 제10조). 하지만 북향민이 제3국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가 없어 입국 심사 후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신병이 인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경우도 같은 절차로 포섭하여야 한다.

또한, 제3국 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 취득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적이 불분명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판정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국적법」 제20조), 이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대상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북한국적 소지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법무부의 확인절차 없이 통일부 장관의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다(위 법 제19조).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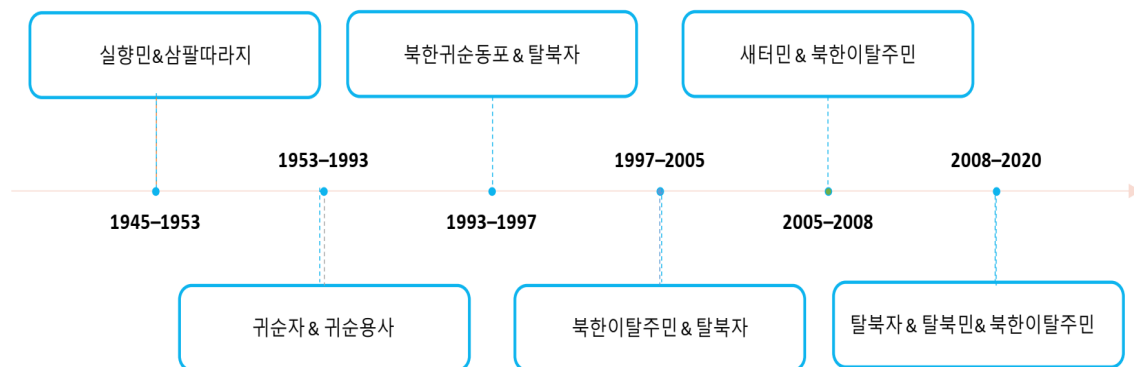
2)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제7조(보호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1) 2020. 2. 25., 북향민 인터뷰 증언 중.

라서 북한지역을 탈출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향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판정을 신청할 경우 그 신청자의 혈통에 문제가 없고 탈북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면 국적판정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북향민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체계 아래에서는 국적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특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북향여성의 국내정착과정 관련 법제



<그림 3> 북향민의 용어 변천

북향민의 국내정착과정 관련 법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점과 변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히 관련 법제의 연혁을 보기로 한다.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1962. 4. 16., 법률 제105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월남귀순자법’이라 한다)은 그 명칭에서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자를 같이 묶어 규정하고 있다. 월남귀순자를 ① 북한괴뢰집단의 군인으로 복무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② 북한괴뢰집단 및 그 소속단체의 간부로 재직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③ 북한괴뢰집단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의 중대한 기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중 국방부 산하 국가수호자특별원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용대상을 판정한다.¹⁾

위 법률은 남북한 체제경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에 항거하거나 북한의 간부, 민간인은 북한의 중대한 기밀을 가진 자로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월남귀순자’를 대북한 체제경쟁의 선전물로 활용될 수 있거나 북한 관련 중요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남귀순자’에 대한 판단을 국방부 산하 국가수호자특별원로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는 점에서 북향민

1) 「월남귀순자법」 제3조(정의) ⑥ 본법에서 월남귀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 북한괴뢰집단의 군인으로 복무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2. 북한괴뢰집단 및 그 소속단체의 간부로 재직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3. 북한괴뢰집단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의 중대한 기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1978. 12. 6., 법률 제3156호로 제정된 것)은 앞선 월남귀순자법보다 범위를 좁혀 월남귀순용사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법은 적용대상자를 ① 북한괴뢰집단의 군인(軍屬을 포함한다)으로서 복무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② 북한괴뢰집단 또는 그 소속단체의 직원으로서 재직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③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④ 북한괴뢰집단에 의하여 밀파된 간첩으로서 자수·전향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¹⁾.

위 법도 앞선 「월남귀순자법」과 같이 여전히 북한과의 체재경쟁 시각에서 북한을 대남적화노선을 가지고 남한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를 월남귀순용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월남귀순자’에 대한 판단을 국방부 산하 월남 귀순 용사 원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는 점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1962년 법과 달리 민간인이 ‘중대한 기밀’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월남귀순용사 특별보호법」은 1993년에 전면개정되어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변경되었다(1993. 6. 11., 법률 제45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 법은 북향민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로 규정하여(같은 법 제2조) 북한과의 체재경쟁이 일단락되었음을 반영하였다. 앞서 본 법령들과 달리 위 법 제3조는 국방부가 아닌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하 귀순 북한 동포 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순북한동포에 대한 보호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향민에 대한 정착지원 주무부서는 보건사회부였고, 당시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가 협조부처로 구성되었다.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은 제정이유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향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향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²⁾

1997년 위 법 제정 당시 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거주지에 전입하여 2년간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북향민에 관련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1)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등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이나 기타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월남 귀순 용사 원호심사위원회에 월남귀순용사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북한괴뢰집단의 군인(軍屬을 포함한다)으로서 복무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2. 북한괴뢰집단 또는 그 소속단체의 직원으로서 재직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4. 북한괴뢰집단에 의하여 밀파된 간첩으로서 자수·전향한 자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 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하였다.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에 통일부가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북향민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한 기능은 여전히 국가안보적 관점의 국정원의 결정으로 침해될 여지가 다분하다.

4. 국정원 합동신문과 북향여성

군 정보사령부 군인들은 북한에 대한 정부수집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속적인 북향민 관리를 해왔다.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1961. 7. 3. 「반공법」이 제정되는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을 비난하고 선전·선동과 중상행위를 지속하여 대남적화노선을 표출하고 있으며, 남한 내 북한과 동조하는 행위가 잔존한다는 국가안보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62년 「월남귀순자법」과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서는 국방부 산하 위원회의 심사로 법 적용 대상자를 판별한다. 한편, 국방부의 정부사령부는 1946년 군정청 총사령부 정보과로 발족하여 1946년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개편, 1990년 국군기무사령부를 거쳐 국군 정보사령부로서 북한의 주요시설의 위치, 북한 군부대의 동향, 북한 내 고정간첩과의 접선 등으로 북한 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조직이 위 심사체계와 결합하여, 심사 과정에 국가안보 시각에서의 배타적이고 부정적 정보가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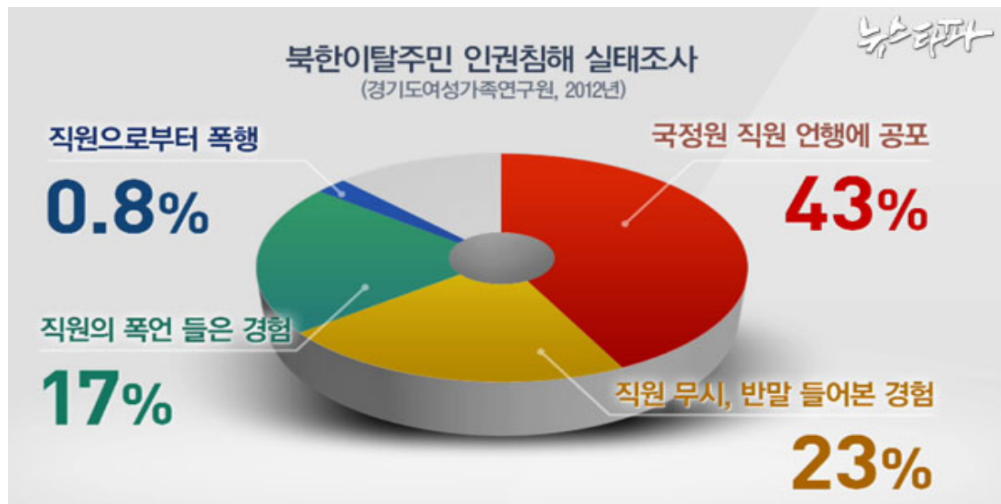
북한의 고난의 행군¹⁾ 이전 국내 입국자가 적었을 당시에는 국군 정보사령부 시설인 '대성공사'를 이용하여 북향민을 임시수용하고 조사하며 신원을 확인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다. 최근 북향여성 강간 등 사건의 가해자로 보직해임된 군 정보사령부 군인 중령과 상사 또한 북한의 군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피해 북향여성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북한에 있는 그녀의 가족을 통해 북한 내 정보를 입수했던 사실을 볼 때 인간을 통한 임무 수행 및 정보획득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²⁾

<그림 4> 국정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출처 : 뉴스타파(2014. 3. 18.), “‘한국의 관타나모’ 탈북자 합동신문센터”,

1) 고난의 행군은 1994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봉사를 강조한 김정일 위원장의 당적 구호이다. 19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조.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dicaryId=4> (검색일 2020. 12. 12).

2) 한겨레21 1318호(2020. 6. 19.), “‘탈북여성 ‘미투’...정보사 2명 성착취, 군검찰 2차가해”,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826.html (검색일 2020. 10. 14.)내용 중.



<https://newstapa.org/article/Lqk7a> (검색일 2020. 10. 15)”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신센터)는 북향민의 신원확인 및 합동심사를 수행하며, 국정원이 주관으로 관리하고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파견되어 진행된다.¹⁾

국정원 규정인 ‘북한이탈주민 관리지침’에 따라 북향민 조사²⁾ 및 관리를 위한 기간이 8개월이었으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최근 2개월로 축소되었다. 북한이탈주민보

1)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제7조(보호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 신청자에 대하여 보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 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정원 조사의 법적 근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2019 개정) 제12조에서 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생지·직업·가족관계·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 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북한 이탈의 동기·과정, 북한 이탈 후 정황 및 입국 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 신청자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 신청자에 대한 보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 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 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 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 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 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 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팩스·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호센터에 들어오면 옷을 다 벗기고 번호판을 들고 수형자를 등록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는다는 진술도 있었다. 합심센터 조사 후 한 북향민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남한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차를 타라고 해서 어디론가 이동 하더니 저에게 가진 짐을 다 내놓고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번호판을 들어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난 한국에 온 것이 죄인가요.”¹⁾

북한에서 고위 당 간부이거나 북한 내 고급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개인 방을 배정하고 나머지 일반 민간인은 3-5명이 잘 수 있는 방에 수용하고 있다. 국정원의 주관 하에 국방부와 검찰, 경찰의 합동신문조를 구성하여 1차 방첩신문, 2차 정밀신문을 실시한다고 한다.²⁾ 또한 북향민 각 개인들에게 북한에 태어나서 남한에 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센터에서 나가기 전까지 다 쓰라고 했다고 한다. 다음은 합심센터 내 합동신문조의 질문이다.

“너 북한에서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남자들하고 자지 않았냐?
북한에서 있었다면 왜 이런 것도 모르냐?
북한에서는 언제부터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냐?
네가 그 직장에 있었으면 당 비서랑 연애하지 않았냐?”³⁾

여러 북향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3년 전 국정원 합심센터에서 조사 시 심문하다가 뺨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심야에도 심문을 하여 괴롭혔으며,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할 때에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2013년 북한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합심센터 내 고문이나 협박, 폭행 등이 문제되자 이 사건 이후 직접적인 고문이나 협박보다는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계속 부여하여 이 당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던 북향민이 많았다.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여전히 북향민을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용으로 수용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북향민에게 고급정보를 뽑아낼수록 해당 국정원, 국방부 직원들에게 승진과 포상이 부여된다. 국정원과 국방부 정보사령부 군인들의 예산 편성에 있어 북향민을 통한 고급정보 획득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향민보호센터에 온 북향민에게 무리해서 고급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임시보호처라고 불리는 북향민보호센터에서 심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문 과정에서 특정 북향민을 신원 특이자나 사회적응능력 불량자로 낙인을 찍으면, 보호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5.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향여성

1) 2020. 9. 30. 북향민 인터뷰 중

2) 2020. 8. 18. 북향민 인터뷰 중

3) 2020년 1월 ~ 10월 북향민 인터뷰 중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향여성 간의 문제도 있다. 현재 북향민에게 제공되는 보호담당관은 취업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¹⁾’은 보호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급으로 나누어서 ①‘가’급의 경우 전담 신변보호관 1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근접 보호를 하되, 귀가 이후 등 보호 대상자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는 정도의 보호를, ②‘나’급의 경우 신변보호관이 주1회 이상 대면과 거주지 점검을 통해 직접 안전 확인, 대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간접확인을, ③‘다’급의 경우 신변보호관이 월 1회 이상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중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하되, 보호 대상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안전 확인으로 보호의 정도에 따른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아래 내용은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한 북향민을 인터뷰한 것이다.

“저에게 신변보호경찰이 북한에 돈 많이 송금하는 사람,
여기 왔다가 월북하려는 사람, 북과 자주 연락하는 사람,
북한을 찬양한다거나 색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²⁾

특히, 신변보호지침상 가급과 나급의 경우에는 신변보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신변보호 내용에는 ‘보호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신상 변동사항 등 관련 자료수집’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정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신상 변동사항’은 원래 취지와 달리 북한과 내통하거나 북한에 많은 돈을 보내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신변보호라는 이름 아래 북향민을 북한정보수집 대상으로, 간주하고 북향민을 통해 자료수집 및 북향민을 반체제사람으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사상검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찰청 지침의 태도는 국가기관이 북한의 침략에 방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토를 방어한다는 국가안보론을 바탕으로 북향민을 감시하는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신변보호담당관제도도 2019. 1. 15. 북향민 관련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었지만, 그 성격이 신변의 ‘보호’가 아니라 북향민이 잠재적 범죄자임을 전제로 하는 ‘감시’성격의 보안처분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2019년 비공개‘경찰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을 확보하여 일부 소개.

2) 2020. 9. 30. 북향민 인터뷰 중.

1) 정착단계별 개선방안

단 계	현 행	개 선
임시보호조치(2~3개월) (제3국 및 보호센터)	▶ 보호센터에 가두어놓고 조사하며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대성공사 폐쇄
기초적응교육 단계 (3개월) (하나원)	▶ 개인별 선호 반영 부족 ▶ 단기적 관점에서의 진로 상담	▶ 그룹별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 장기적 인생 설계 관점의 진로 상담·교육
신변보호 단계 (5년~폐기)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 신변보호담당관이 관리 감독 ▶ 실시간 감시체제 ▶ 최소기간 5년	▶ '자립·자활'을 위해 신변보호담당 관제도 폐기 및 일반복지체제 편입

(1) 국내입국 전 피해에 대해

하나원에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면서, 매 기수마다 교육생들 일부가 북한과 중국을 체류하는 과정이나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 중에 겪은 신체적, 정신적 범죄피해로 인해 여러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현재 하나원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재난에 대해 마음건강센터 내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통해 치료하고 있지만, 지속적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정신적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들인 북향여성들이 겪은 피해들은 하나원 체류기간인 3개월 내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발생이 가능한 북향여성 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향여성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이다.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는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스마일센터의 구체적 설치근거와 직무범위를 규정해 두고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법무부 스마일센터 운영매뉴얼 각 참조). 특히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유 기관이므로 업무의 연관성도 매우 높다.

최근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북향여성의 폭력피해에 대한 심리지원 요청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피해내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¹⁾

하지만 현재 스마일센터의 지원대상은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가족이다. 즉, 위 “피해자”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북한이탈주민 등 국적이나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구조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²⁾ 또한 위 “강력범죄”의 발생장소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문제는 발생장소가 대한민국 영토 내인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스마일센터의 지원대상 여부를 제한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언급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³⁾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 요건일 뿐이므로 제7조의 손실 복구 지원조치인 스마일센터의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 결국, 북한 및 중국체류, 한국입국 여정 중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북향여성 피해자와 가족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손실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스마일센터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2020년 스마일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계획, 스마일센터 개소 보도자료 등 스마일센터 관련 자료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기존 견해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북향여성 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스마일센터 확대와 정신과 전문의, 상담인력 등의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2) 국내입국 후 : 국정원 조사단계

임시보호조치(보호센터 단계)에서 국정원과 군 정보사령부 주도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이루어지는 합동심문은 북향민에 대한 보호결정을 위한 임시보호조치 및 조사행

1) 2020. 7. 법무부 인권구조과 000 담당자의 답변.

2) 다만 외국인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위라고 하나, 사실상 국방부의 대성공사(군 정보사령부 운영),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의 임시보호조치는 실질상 ‘신원확인’ 및 ‘대북정보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특히 국정원 조사단계에서 과거 고문이나 협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다면 지금은 북향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또 다른 인권유린 피해가 존재하는 만큼, 국정원 조사단계에서 조사 시 조사 전 과정을 녹취 및 녹화를 하여 조사과정에서 겪는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북향여성 조사 시 여성조사관을 배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절차를 안내하여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조사관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국정원 직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북한의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냉전시대 산물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직접 오는 북향여성들보다 중국에서 최소 5-10년 거주하다 한국에 오는 북향여성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북향여성들을 북한의 새로운 정보 및 고급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2-3개월 동안 가두어두고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이탈주민 관리지침’을 양성화하고, 국정원의 정보업무 범위 변동이 있는 점 등을 함께 반영하여 관련 조치를 최소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상향하고 적법통제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 입국 북향민 수도 급감하고 있고, 긴급상황에서 북향민을 둘러싼 여러 인권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최종적으로는 북향여성들의 인권유린의 현장이 되어버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및 대성공사를 폐쇄해야 할 것이다. 신원조사는 북향민의 국내 입국 후 국정원 직원을 통 일부에 파견하여 하루 내에 간단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끝내고, 통 일부 주관으로 하나원에서 국정원의 인권유린 행태를 조사하고 발표하여 국정원 내 인권유린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수행해 온 기능 중 남한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영역은 살리거나 다른 기관에 승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센터를 통일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광역자치단체에 기관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운영 관행은 프로그램과 운영 규정의 영향도 있을 것이므로 북향민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냉전논리와 대결적 구도에서 벗어나서 전면 재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은 기본적인 자유 및 사회의 흐름을 알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향민 출신 자들과의 만남 및 대담, 남한 사회생활의 노하우, 북한에서 얻게 되었던 정신적 고통 등의 치유, 지역주민의 참여와 어울림 등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위 프로그램들 역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등으로 공개하면 좋을 것이다.

(3) 국내입국 후 : 신변보호담당관 단계

가)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문제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경찰과 북향여성이 갑과 을의 관계로 관계가 구축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향여성은 하나원 퇴소 후 한국사회에서 살아온 노하우가 없으니 소개받은 담당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며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 형사의 위치가 북한 인민에게 절대적 공권력 그 자체이기에 이러한 갑·을 관계는 심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과도기 단계에서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의 필수적 배치사유와 임의적 배치사유로 나누어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북한이탈주민 관리지침에 따르면, 신변보호기간은 “‘가급’과 ‘나급’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기간은 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5년) 범위 내에서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도를 감안하여 정하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신변위해를 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신변보호 경찰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인터뷰에서 북향여성들은 5년 이후에도 본인들 의사에 관계없이 신변보호담당관이 배치되고 감시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따라서 신변보호담당관제도에 대한 과도기 시기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을 5년 동안 배치하고, 임의적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다. 신변보호담당관의 필수적 배치는 현재 위 경찰청 지침에서 ‘신변위해를 당할 상당한 우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탈북과정에서 사회의 주목을 받아 신변에 큰 문제가 있는 유명인사, 남한거주 북향민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경우, 제3국에서 범죄피해를 입고 도망친 경우 등이 될 것이다.

경찰청은 북향민을 관리하기 위해 북향민들 사이 친목도모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 기존 북향민들은 담당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잘 보여야 자신이 연계하는 단체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북향여성이 신변보호담당관에게 범죄피해를 당해도 기존 신변보호담당관들에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던 북향남성들이 피해 북향여성을 입막음 시키거나 협박을 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신변보호담당관들의 1,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이수를 규정하고 신변보호담당관이 자행하는 인권침해나 범죄피해 등을 즉각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피해신고센터’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 명의 신변보호 담당관이 적게는 30명에서 100명의 북향민을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신변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 전 과도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신변보호담당관 수를 2배 이상 늘려 기존 신변보호담당관들이 향유하는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변보호담당관이 전국으로 흩어져 관리가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들을 통합하여 이들을 관리 및 감시할 수 있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냉전시대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북향민을 관리하기에 이들을 경찰청 보안과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 또한 경찰청의 다른 과에서, 여성 북향민은 여성 경찰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4)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폐지

신변보호단계는 최종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62년부터 귀순용사 법에부터 하나원 퇴소 후 경찰청의 ‘신변보호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북향민을 대한민국 국민이자 보호의 대상이 아닌 ‘대북정보수집용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증언들에 따르면,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자신이 보호하는 북향여성들에게 하루 일과를 보고하게 하면서 북한과 내통하거나 북한에 많은 돈을 보내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그러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관리지침’을 공개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통해 북향여성의 도구화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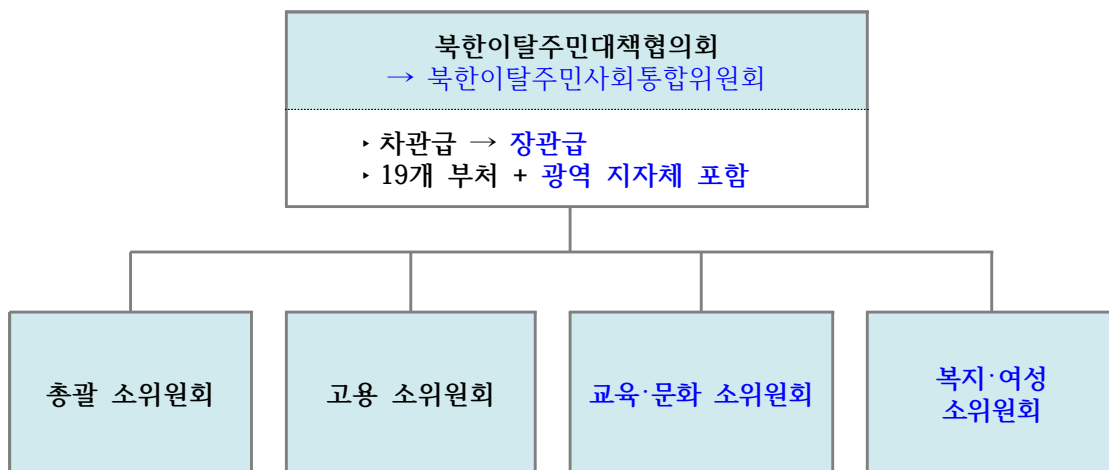
특히 경찰청 북한이탈주민 관리지침에 따르면 북향여성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북한의 테러 기도 예상자(가급), 사회정착 생활이 심히 불안정하여 특별한 관찰과 계도가 필요한 자(나급)’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북향민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 출국의 목적, 체류지, 출국 및 귀국 일시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감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향민들의 사회조기정착을 이유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이 기존 경찰청 신변보호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북향민을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잠재적 문제자이자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기존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신변의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생활정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많은 부서 중에 경찰의 보안과, 50대 남성들로 구성된 기존의 신변보호담당 시스템은 북향여성이라는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향여성들이 하나원에서 퇴소 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지자체 사회복지요원들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변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하나원, 하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바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북향여성들 상당수는 선택의 경험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인해 체제, 문화, 언어 등이 상이한 남한생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북향여성 후견 지원단’을 만들고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과 연계하여 이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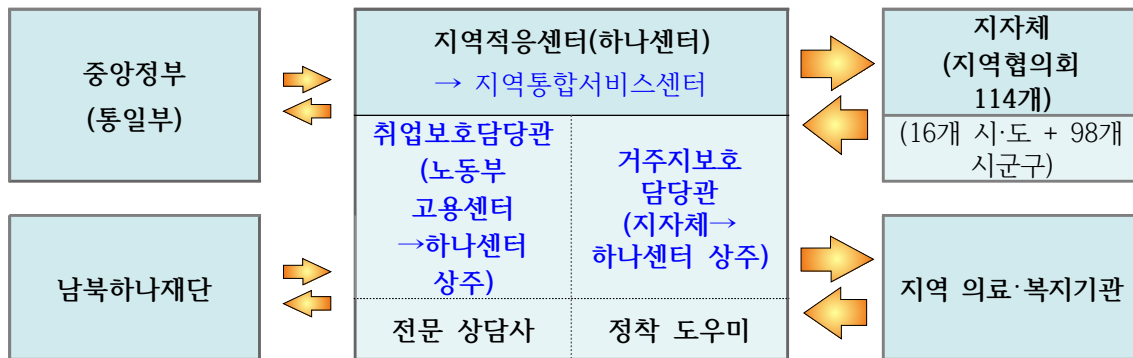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통일부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법원과 변호사협회의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 첫 번째 단계로 통일부에서 북향민 출신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남한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정착하지 못하는 북향여성을 위해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북향여성 후견지원단’위원을 위촉함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부에서는 북향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가정법원과 대한변협에 관련 지원 제도가 필요함을 설득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개편



2014년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이 개정되어 북향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위 법 제4조의3). 현재는 통일부, 법무부, 고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9개 부처가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작성 및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에 북향민을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보는 ‘대책’이라는 용어에서 북향민들의 진정한 자립 및 남한 사회 통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이름 및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부처 위주의 북향민 지원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북향여성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하나원에서 교육 후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광역자치단체에서 북향민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곧바로 정하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의 국가사무 제한) 그 관계를 미리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장기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뒷받침되어 북향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중앙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 협업과 네트워크가 집적된 종합 정착지원센터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북향여성들은 초기 정착기간 동안 남북한의 이질성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필요하므로 하나센터에 주요 보호담당관(거주지·취업)과 분야별 전문상담사(심리·교육·여성·아동복지 등) 및 자원봉사자들을 상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북향여성들이 기존 상담센터에 전화할 경우, 기존 고용된 남한 사람인 상담사가 북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언어는 북향민들이 가장 잘 알고, 북향민들은 남한이 언어, 문화 등이 상이한 곳으로 남한 상담사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힘들여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출신 상담사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실효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북한 출신 전문상담사 및 자원 봉사자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존 초기정착 및 상담 기능 중심 역할에서 북향민-지역주민 간 연계 및 통합의 장으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북향여성과 지역주민 간 소통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역별로 창의적인 프로그램 유도 또한 필요하다. 당장은 현재제를 유지하지만 지자체의 권한에 무게를 두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북향여성들이 하나원 수료 후 하나센터를 거쳐 일반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시스템으로 통합시켜 사회통합 및 정착자립도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발제2.북향여성의 인권과 UN

강윤주 법무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인권¹⁾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문제를 직접 다루는 주된 유엔 사무소로, 1948 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전세계의 의지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국가별·지역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인권 자문 담당자를 파견하여 전 세계에 분포한 유엔 상주조정실 및 유엔 평화유지임무를 지원해오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요청했고, 2015 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가 개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을 목표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을 강화하고, 모든 유관국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증진시키며, 지속적인 소통, 옹호활동, 지평확대 노력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의 가시성을 유지하는 위임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7년 3월 제34차 회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중에서도 특히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서울사무소의 모니터링 및 기록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법적 책임 규명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설립하였다. 서울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 및 증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주요한 보관소로 기능할 중앙화된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구축하고,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면담, 보고서, 인공위성 영상자료, 지도, 법원 서류, 동영상, 녹음 자료, 청원 서한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국제 형사법 기준에 따라 분석하며, 책임규명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 및 증거는 향후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진실과 정의 실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19년 이래 2년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증진하기위해 이 행한 활동 및 그 간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기술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오고

1) 본 발제문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발간의 보고서 및 소개자료들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상세한 사무소 업무와 발간 보고서들을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eoul.ohchr.org/>

있다.¹⁾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성 인권

여성과 여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구의 51.1퍼센트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탈자 대다수는 여성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탈자 대부분도 여성으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다수 여성과의 면담에서 드러난 양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유엔총회에 제출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에 관한 사무총장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에 더하여 특별히 이들 상황을 조망하는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여러 주제별 보고서에서 여성의 상황과 인권침해의 양상과 영향,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여성에 대한 성별, 사회·정치적 지위 또는 젠더에 따른 차별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전적인 향유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권리보장법(2010)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엄격하게 금하며 가정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무적으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명시한다. 하지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여성권리보장법 채택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여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겨진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가정폭력이 만연하다고 언급하며, 여성이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했다.

여성차별로 인해 여성은 경제 및 사회생활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기혼여성은 전통적으로 정식 일자리에서 배제되어왔다. 반면 1990년대 후반 민간경제활동이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민간경제활동을 기혼여성이 주도해왔다. 기혼여성은 비공식시장 및 사무역에 참여하기 좀 더 용이했는데, 남성과 다르게 정부가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부분 가정에서 여성이 가장으로 역할하게 됐지만, 뿌리깊게 자리잡은 차별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기혼 여성은 국가가 직장에 배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주도 하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이나 소규모 동원에 응해야 하고, 기혼 여성이 이미 가사일을 담당하고 자녀를 돌보며 가족 생계를 위하여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기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 책임규명증진에 관한 인권 최고대표 보고서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역할 및 성과에 관한 인권 최고대표 보고서: A/HRC/58/61, A/HRC/52/64, A/HRC/46/52, A/HRC/40/36, A/HRC/31/38 등

2)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발간의 주제별보고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2024)
- "아물지않는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2023)
- 발전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여타회원국에 갖는 시사점 (2021)
- 평화를 위한 인권기반 다지기 (2020)
- "여전히고통스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2020)
- 권리의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2019)
- 분단의 아픔: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분리 (2016)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 동원은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생계를 위해 여성은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활동에 참여했고, 이에 국경지역에 대한 제한이 여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강제결혼이나 성?노동착취를 위해 이웃 국가로 인신매매 당할 가능성이 더욱 많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중국으로 간 여성 다수는 중국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대가로 매매 결혼 혹은 성 착취를 당했다. 이들 여성은 중국 내에서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데, 끊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복송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며, 당국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탈자 여성 다수는 중국에서 송환된 경험이 있다. 복송된 후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 중국에서 임신을 한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시설에서 강제낙태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출산을 했다면 대다수 복송될때 아이는 중국에 남겨져 아이와 헤어진다.

피해자 권리와 "피해자를 중심"에 둔 정의 실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많은 여성들은 다양한 양상의 인권 침해 경험을 했다. 유엔 인권 제도가 처음 마련됐을 때부터 국제 인권 조약은 인권 침해 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과거의 인권 개념은 인권 침해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성에 주목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초점이 이동해왔다. 유엔 총회는 2005 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A/RES/60/147)(이하 "기본 원칙")을 채택했다. 이 기본 원칙은 채택 이후 피해자 권리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프레임워크로 여겨지며, 기본 원칙에 의하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침해 행위의 모든 피해자는 사법제도에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권리, 손해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배상을 받을 권리, 침해 행위 및 배상 메커니즘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 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기타 영향을 받은 이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 및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피해자를 중심"에 둔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을 가능토록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피해자 자신에게 책임규명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유의미한 시정조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구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피해자들과 그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바를 논의했을때, 정의실현과 책임규명 개념을 처음 접했거나 관련한 확고한 의견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당국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피해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책임규명방안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청취 목적의 간담회 (Consultation)와 지평확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¹⁾ 간담회의 주 목적은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고, 피해자, 피해자가족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가능한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해 국제공동체에 알리며, 영향을 받은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런 의견청취활동을 기회 삼아 피해자 및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국제인권법 및 책임규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담은 "설명서(one-pager)"들을 제공하여 이들의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²⁾

피해자 참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의 및 책임 규명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피해자 참여는 모든 메커니즘의 설계와 작용에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관련 있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메커니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의견 청취 과정 자체가 피해자를 피해자로만 남겨두지 않고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진술을 기록함으로써 집단기억을 위해 정보가 보존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를 얻으면서 이것이 일종의 시정조치가 될 수 있다.

피해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서로 배경이 다를 수 있고 권리, 법률,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가 상이하거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또는 기타 비용이 존재하거나, 일부 참여자의 경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다양한 피해자 유형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모든 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여성, 인권

이러한 참여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한반도 상황은 지난 수년간 여러 변곡점을 겪어왔다.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과 협상이 이어지기도 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4년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대화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의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협상 최전선에 비핵화가 자리하고, 평화 프로세스

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1 년 3 월 23 일 제 46 차 회기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관한 46/17 결의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피해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및 기타 유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련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평 확대 활동을 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및 가능한 책임 규명 방안과 관련된 기본 인권 개념에 대한 자료를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권 침해 피해자나 증인을 비롯하여 인권 사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용어 및 개념, 국제법 기준, 유엔의 인권 업무를 간략히 기술했다.
<https://seoul.ohchr.org/index.php/ko/node/499>

상 인권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으며, 여성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목소리는 부재했다.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는 평화 협상과 분쟁 후 평화 구축 및 거버넌스에 있어 여성의 참여와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확인했다. 모든 사람은 공적 활동 및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포용력 있는 의사 결정과 유의미한 참여는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9년 "평화를 위한 인권 기반 다지기" 라는 제목의 토론서를 발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여성들과 개별 면담과 표적집단토론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 프로세스,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인권 문제,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도록 독려했다. 이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오랜 시간 지속성 있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경제 및 사회발전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만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이 향후 진실 및 책임규명 절차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진실규명, 정의실현, 개혁은 수십년이 걸려야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이런 조치가 화해와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상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인권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여성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의 경험, 의견, 필요를 경청하고, 그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더욱 포용력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정당성과 주인의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발제3.북향여성의 가정

최연옥 실장 직무대리(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

북한이탈주민 여성 정착 현황-가정실태 중심으로

1. 서론

탈북 여성 중 북한 탈출,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은둔, 한국 입국 과정에서 가족해체 및 재구성 과정을 겪게 되는 경험으로 인해 한국 정착에서 트라우마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은 탈북 과정에 국경을 달리하는 삶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각각의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탈북 여성의 경우 대부분 복잡한 가족 구조(북여-남남, 북여-북남, 북여-중남, 북여-기타)로 인해 자녀의 출생 국가(북한, 중국, 남한, 러시아 등)도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탈북 여성 중 북한 남편의 한국사회 적응, 중국 남편과의 가족 재구성 및 남편의 한국사회 적응, 한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나타나며 특히 자녀의 한국사회 교육 및 문화적응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위의 어려움으로 인해 탈북 여성은 가정 내 갈등 및 사회적·문화적 차별을 감당하게 되며 한국 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살아가게 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은 전체 입국자(34,352명) 중 72.1%로 24,768명이며 탈북민 인구구성의 과반수를 이루고 있으며 탈북민 정착지원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한국에서의 탈북민 여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적응과 복지 차원에서의 논의가 많아 왔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정착지원 현장에서 주로 드러나는 문제임은 틀림없으나 탈북 여성과 가족 구성원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발표는 탈북민 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와 '2024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및 '2024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와 '2024 남북하나재단 탈북청소년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탈북 여성의 가족실태에 대한 인터뷰자료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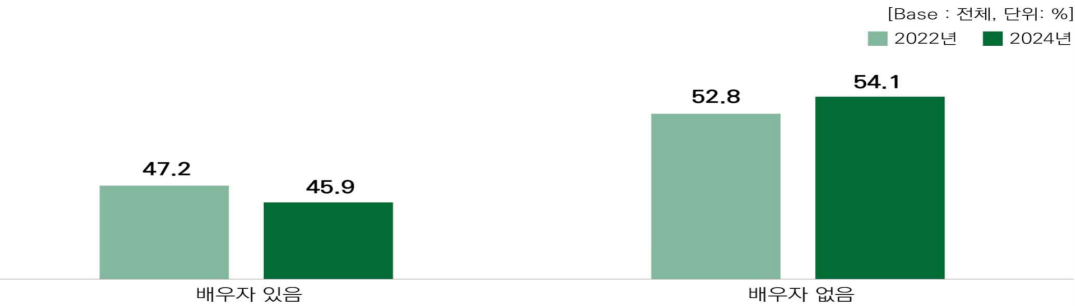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표에서는 탈북 여성 개인이 겪게 되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정착 실태를 살펴보고 탈북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탈북민 여성과 가족

탈북민 여성 가족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남북하나재단 ‘202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연구결과에 따른 배우자 유무, 배우자 출신지역,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등 가족구조 및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 인터뷰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1) 탈북민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에 대해 ‘배우자 없음’이 54.1%로 과반수로 높았으며, 특히 탈북 여성의 경우 ‘배우자 없음’이 54.6%로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남성	47.1	52.9	100.0
여성	45.4	5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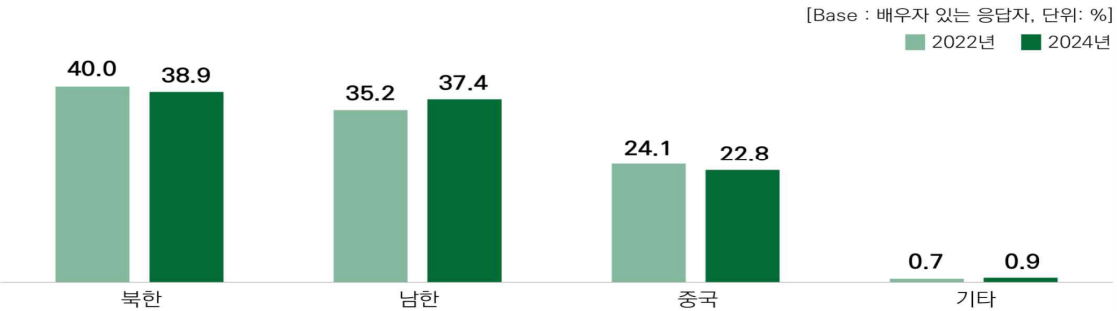
한국 입국 후 탈북 여성이 가족관련 문제로 겪게 되는 주된 어려움은 우선 한국 입국 후 북한 및 중국에서의 가족(남편, 자녀)을 데려오는 문제이며 이 과정에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북한 가족을 데려오는 브로커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족과 이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중국에서 살던 남편과 자녀를 데려오는 문제도 남편과 시댁의 동의 등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며 그 과정에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고 자녀의 입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탈북 여성의 경우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으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중국 남편과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자녀와 남편의 입국 문제로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시댁과 남편의 반대로 자녀를 데려오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며 중국에 있는 자녀의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겪게 된다. 드물게 중국 시댁에서 자녀를 볼모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협박하는 예도 발생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법률 자문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가족을 데려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리적 갈등과 외부 환경의 요인으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되며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 남편을 데려오는 경우 탈북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중국 남편의 경우

에는 입국 후 한국 사회 적응 문제가 우려되어 갈등을 겪게 되며 이 과정에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2) 배우자 출신 지역



<2024년 성별에 따른 배우자 출신 지역>

전체	북한	남한	중국	기타
남성	78.2	11.0	8.1	2.7
여성	25.5	46.4	27.9	0.2

탈북민 전체 계층의 배우자 출신 지역으로 ‘북한’이 38.9%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 출신 지역’이 ‘남한’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탈북민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은 가족 내 구조적인 갈등과 대립을 낳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불신과 차별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한다. 탈북 여성의 경우 남편의 출신 국가 및 자녀의 출생 국가에 따라 겪게 되는 고민도 다양하며 북한 출생 자녀의 경우 대부분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며 중국 등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 언어 및 문화 적응의 어려움과 또래 관계, 대인관계 등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에서 남편을 데려온 이후의 생활과 갈등 요소가 탈북 여성의 정착에서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남편의 취업 문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며 자녀 교육 등 문화 적응에서도 가정 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북 여성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배우자와의 만남과 결혼 과정에서도 어려운 고충이 발생한다.

남한 출신 남편의 사업 실패, 문화적 차이, 시댁 갈등 등 문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탈북 여성과 남편의 개인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냉대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남한 출신 남성과 결혼할 때 한국 사회의 탈북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탈북 여성 중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남편과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 이혼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

3) 함께 살고 있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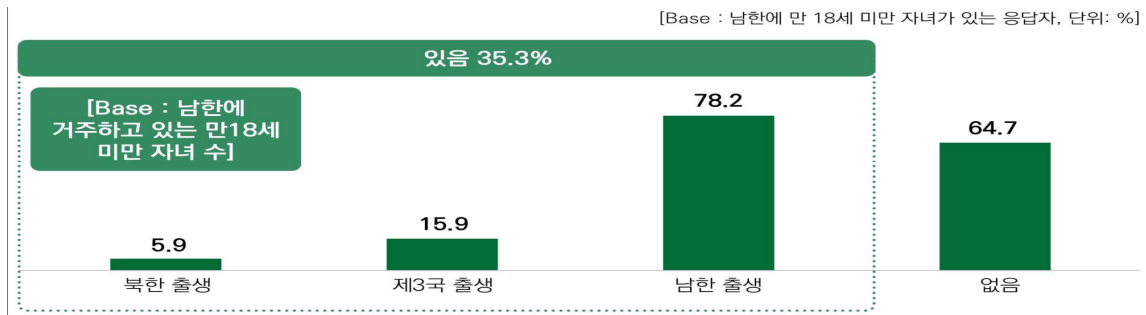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 ‘미혼 자녀’가 4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 (40.5%)’, ‘부모(배우자 쪽 포함)’(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탈북 여성의 경우 ‘미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문제에서 애로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북한에서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 성적을 다 책임져 주는데 한국은 다 학원에 가서 배워야 하니, 돈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서 놀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위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미혼자녀를 키우고 있는 탈북 여성의 경우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 학교 관계자와의 소통,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등 다양한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다양한 가족 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3. 탈북민 자녀 양육과 돌봄

다음으로 탈북민 여성 자녀 양육과 돌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남북하나재단 ‘202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연구 결과에 따른 자녀 유무 및 출생자, 자녀 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 등 조사 결과와 관련 심층 인터뷰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1)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유무 및 출생자(만 18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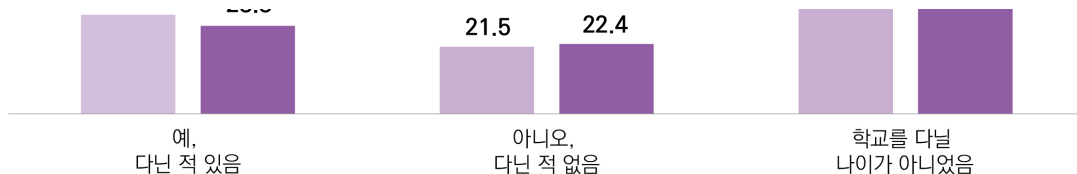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한에 만 18세 미만 자녀 유무에 ‘있음’은 35.3%, ‘없음’은 64.7%로 나타났으며 출생지별로 살펴보면 ‘남한 출생’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3국 출생’이 15.9%, ‘북한 출생’은 5.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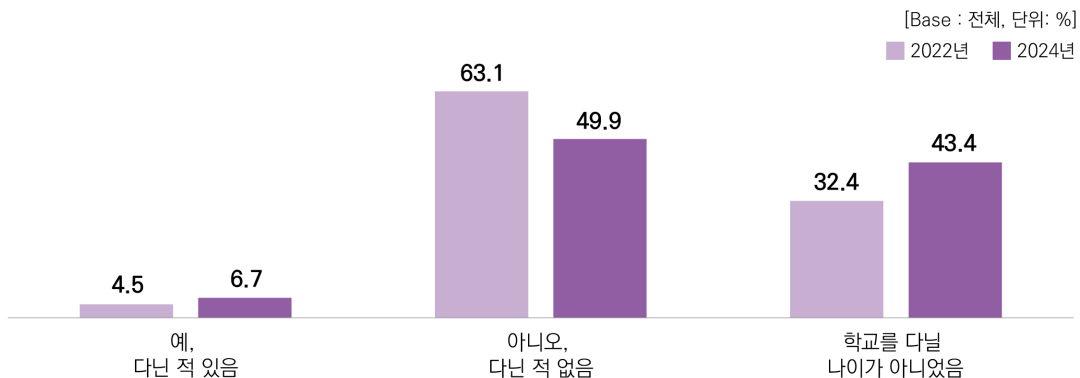
남한 거주기간 별로 살펴보면, ‘있음’은 남한 거주기간 ‘10년 이상’(36.0%)이 가장 높고, ‘5년~10년 미만’(35.5%), ‘3~5년 미만’(27.6%), ‘3년 미만’(13.6%) 순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한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탈북민 자녀의 출생 국가에 따라 각각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대부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사회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및 중국 출생 자녀의 경우 북한 및 제3국에서 무학 경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친부와 이별하고 양부와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부모의 학습지도 및 안정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어 심리적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재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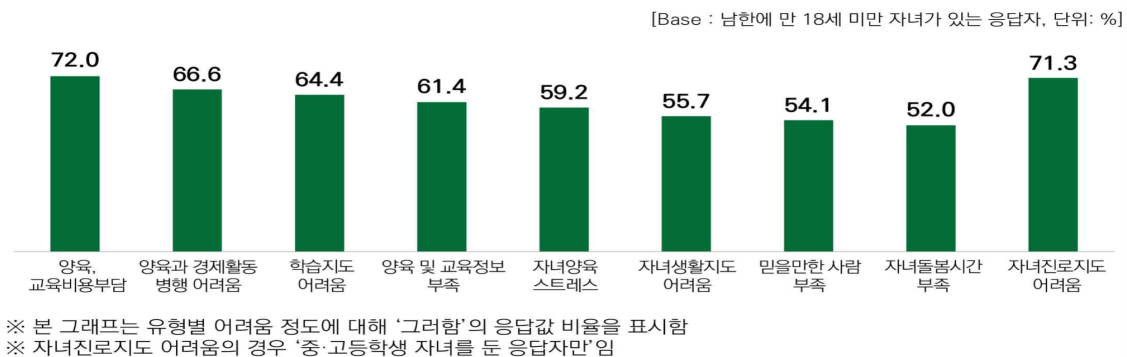
<제3국에서 재학 경험>



남한 출생 자녀의 경우도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및 가정해체 등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탈북민 부모가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바 자녀의 정서 안정과 사회 적응도 열악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최근 강동경희대병원 연구팀은 ‘탈북 아동 청소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위험이 국내 아동 청소년에 비해 1.3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탈북민 가정에 대한 정서 안정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2) 자녀 양육관련 어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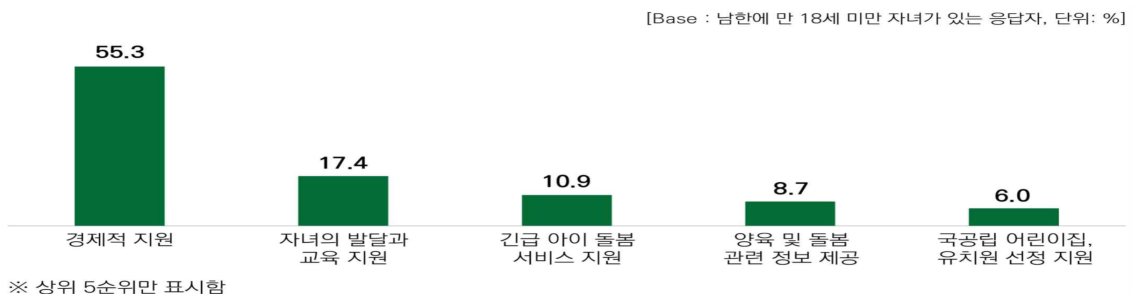


자녀 양육 관련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 '양육, 교육비용부담'이 72.0%로 가장 높고,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 어려움'(66.6%), '학습지도 어려움'(64.4%), '양육 및 교육정보 부족' (61.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양육, 교육비용 부담'은 '5~10년 미만'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 어려움'은 '3년 미만' (95.5%), '학습지도 어려움'은 '3년 미만' (87.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부분 생산직 등에서 일해야 하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자녀 양육관련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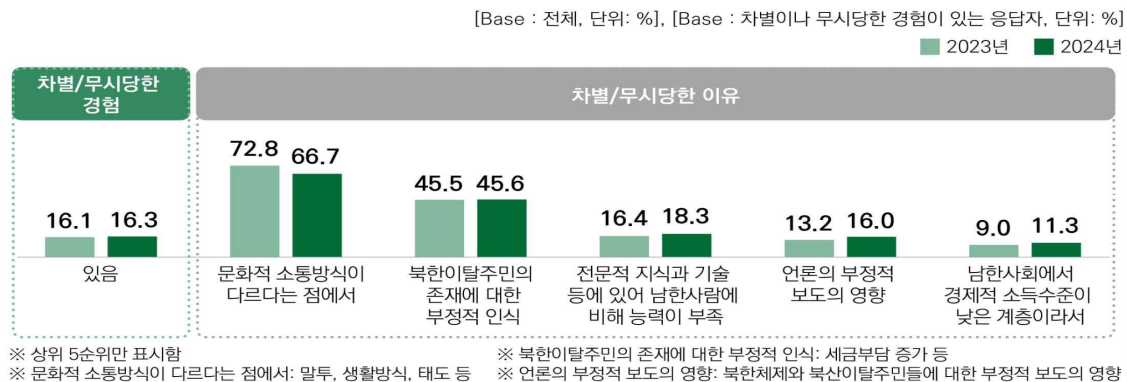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경제적 지원’이 55.3%로 가장 높고, ‘자녀의 발달과 교육 지원’ (17.4%), ‘긴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10.9%), ‘양육 및 돌봄 관련 정보 제공’ (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한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은 ‘10년 이상’(56.8%)이 가장 높고, ‘자녀의 발달과 교육 지원’은 ‘3년 미만’(19.1%), ‘긴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은 ‘5~10년 미만’ (18.2%), ‘양육 및 돌봄 관련 정보 제공’은 ‘3년 미만’(27.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은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위 결과에 나타났듯이 탈북민 가정의 경우 경제적 지원과 자녀의 발달과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탈북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자녀 발달지원을 위한 심리치유지원, 맞춤형 학습지도 프로그램, 장학지원, 생활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차별/무시당한 경험과 이유

<차별/무시당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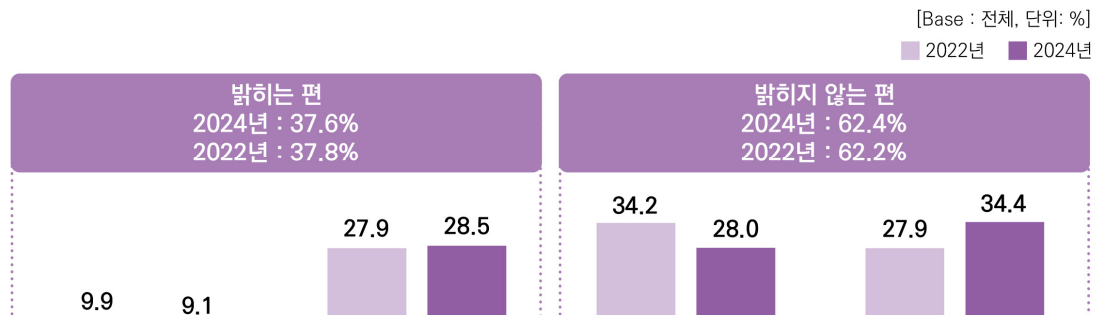
차별/무시당한 경험에 대해, ‘경험 있음’이 16.3%로 나타났으며, 2023년 대비 0.2%p 높아짐

차별/무시당한 이유로는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66.7%)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45.6%)이 높게 나타남

2023년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0.1%p 높아졌으며,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가 6.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탈북청소년 62.4%가 북한 출신임을 밝히지 않는 편으로 조사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 수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 탈북 공개 여부>



탈북 여성 정착의 가장 어려운 외부요인은 우리 사회 편견과 차별 의식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탈북 여성의 국가별 이동에 따른 가정 탈북 여성은 가족들을 위해 용기를 내고 실천하는 여성이며 자신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가족 간 갈등을 극복하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존재라는 사회적 공감과 수용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 탈북 여성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구조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에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관점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탈북 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탈북 여성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데도 단지 시혜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아닌 이들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탈북 여성 가정실태에 따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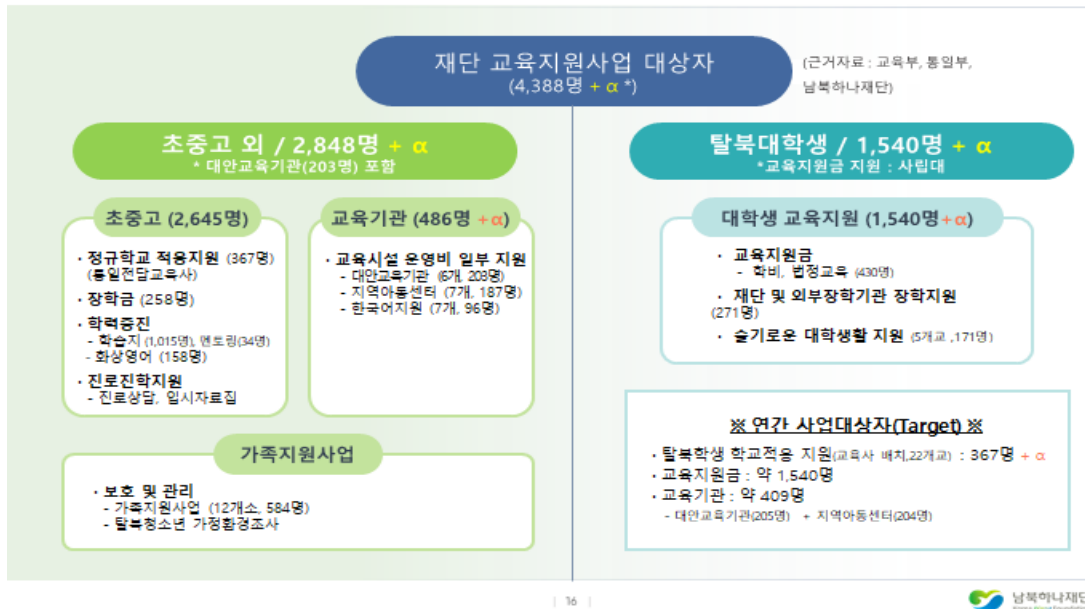
우선 정착지원 추진에 있어 탈북민 개인지원에서 가족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탈북민 교육지원 강화, 심리안정을 위한 탈북 여성과 가족 단위 지원, 정서적 지원 강화, 탈북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1) 탈북민 교육지원 강화

아래 <그림 1>은 남북하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 현황이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 대상 교육(장학금)지원 확대하고 탈북민 자녀 한국어 교육지원 강화, 학습멘토링, 학교생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필요하다. 특히 제3국 출생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지원’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에 한국어교육 학제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병역제도도 이들의 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 재단 교육지원 현황>

재단 교육지원 현황



탈북대학생 / 1,540명 + α
* 교육지원금 지원: 사립대

대학생 교육지원 (1,540명 + α)

- 교육지원금
- 학비, 입정교육 (430명)
- 재단 및 외부장학기관 장학지원 (271명)
- 슬기로운 대학생활동 지원 (5개교, 171명)

| 16 |

남북하나재단
North Korea Foundation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탈북민 자녀 A씨는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안학교를 다니며 초·중고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 지난해 입대했는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적응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사에 대한 대책으로 군의 제도적 정비방안 마련도 시급하지만 탈북민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북하나재단이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어교육 지원 및 학습멘토링 등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체계적인 심리안정 지원체계 구축 및 효과성 제고

탈북민 가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 마련 등 긴급한 구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 여성들의 가정의 해체, 재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에 대한 구조화 및 연구에 기반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하나재단-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탈북여성 심리상담 및 치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인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3) 가족단위 프로그램 지원 확대

가족단위 상담지원, 부모교육, 가족여행, 명절행사 등 가족 소통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가족 회복의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자녀와 대화 방법,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힘, 자녀와 대화 상황에 맞는 스피치 매너, 상처 주지 않는 효과적인 피드백 등의 내용으로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4) 탈북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 정책 강화

탈북 여성의 아픔과 애로를 공감해 주고 따뜻한 이웃으로 수용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민 집단 내 탈북민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탈북민 지역공동체 구축하여 상호소통·지지·교류할 수 있는 소모임 (형성)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하여 탈북민 고립(은둔자 및 취약계층 발굴) 예방 및 건강한 정착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등 사회통합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림 2 : 재단 사회통합 성과>



위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탈북민 공동체 활성화, 남북한 주민 간 소통 및 화합을 강화, 기부금 사업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재단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사회통합 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하고 대학(원) 유관 학과 협업 사회통합교육 강좌 개설 및 유관기관 MOU추진 등 탈북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 정책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우리사회 사회통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탈북 여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향후 재단과 탈북민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발표를 마치며 위 논의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탈북 여성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지원에서 가족지원으로 정책을 확대하며 우리 사회의 탈북 여성에 대한 포용과 지지를 확산시키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문수인. 2024.『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변화 양상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이경. 2019.『탈북여성의 가족해체 및 재구성 특성과 자녀양육경험』.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화진. 2010.『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재순. 2009.『남녀관계의 갈등과 단절의 경험을 통해 본 여성의 자아성찰과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해룡. 2005.『북한이탈 주민 현황과 문제』. 한국학술정보.
- 권영길. 2005.『여성새터민 정착 실태 보고서』. 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5.
- 권태환. 2004.『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희, 김혜장. 1997. 가부장적 국가 『여성과 사회』 8집.
- 남북하나재단. 2024 『북한이탈주민 정책실태조사』
- 남북하나재단. 202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남북하나재단. 2022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연합뉴스 2025.8.19. “탈북 아동·청소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위험 1.3배 높아”
- YTN 2025.7.29. 뉴스 “군인권센터 “탈북민 자녀 병사,괴롭힘에 생활관서 투신”. 끝.

발제4.북향여성의 인권과 경제

백영숙 회장(파주시 북한이탈주민협회)

1) 북한이탈주민 여성 인권 피해 상황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수는 대략 3만40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문제 탈북 트라우마 등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 겪게 되는 인권 피해 상황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탈북민 인권에 대한 연구들은 탈북민의 인권 의식 및 일터에서의 인권 피해, 트라우마 탈북민 신변보호제도 개선 방안 등에 집중되고 있다.

- 대한민국에 입국 후 겪는 탈북민 인권침해 상황들을 보면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에 삶의 질 저하가 더 심해지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탈북 여성의 인권 피해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탈북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탈북 여성들의 일터에서 인권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 탈북 여성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제도적 차별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일터에서 성희롱이나 일상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대처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로 탈북민 신변 보호 제도개선에 관한 대표적인 실태를 놓고 볼 수 있다.

탈북민 신변 보호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은 신변 보호 제도가 보호와 감시의 이중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탈북민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변보호제도를 통해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활동에 비교적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정서적 침해, 신체적 침해, 성적 침해, 방임적 침해 등 여러 인권침해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탈북 여성 인권상황 개선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제 위기에 빠진 탈북민들은 스스로가 여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무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 이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에 주목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정의하는 작업은 이들의 열악한 삶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상

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탈북 트라우마의 문제와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특히 탈북민 구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탈북민 모자 가정의 빈곤화 문제와 연결 지어서 살펴볼 때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보다 현실성과 정합성이 높은 지원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또한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 확장을 위해 남북의 차이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자기 삶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 생활 밀착형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 탈북 여성의 나 홀로 양육 문제에 대한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남한에 가족이 없는 탈북 여성에게는 위급한 상황에서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인적 관계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에 양육의 책임을 나누고 양육 관련 지식 정보들을 공유하는 양육 파트너가 필요하다.

- 탈북 여성들이 탈북 남성들에 비하면 취업이나 적응이 빠르다는 보고도 있으나, 여성들이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생활 속에 여성들이 겪는 고충이나 범죄 피해의 가능성은 더욱 커 더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 남한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취업난과 위태로운 노동 시장의 환경에 탈북민 여성을 기피하는 차별의식까지 더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요구된다.

-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자각하고 이전보다 확장된 세계의 열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개발 관련 교육과 함께 진로 적성 개발을 위한 여성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 법률적 지원체계 개선.

북한이탈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법 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보호 기간 연장

서울시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 사망 및 40대 탈북민의 고독사 사건 모두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5년이 만료된 탈북민들은 대부분 특례제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일반 사회복지 시스템

에 포함되는데 이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즉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거주지 보호 기간 5년이 종료된 가구에 대한 탈북민 취약·위기 발굴 체계가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취약·위기 발굴을 통해 취약·위기가구로 판정된 경우,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규정의 예외 사례로 간주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 입국 10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는 사적 관계망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가족이 없이 살아가는 무연고 1인 가구와 같은 탈북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취약·위기가구 발굴 체계가 작동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활동

대한민국에 입국한 여성 탈북민의 삶은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취업 지원 등으로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다수 탈북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탈북민이 한국 사회로 편입됨과 동시에 시민권을 인정받고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이자 취약계층으로서 문화적 소통과 참여, 정치적 권리 향유, 경제적 조건 등 일상의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배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여성이라는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 저해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저해 요인과 고용 배제 요인은 개인적 측면과 가족적 측면, 제도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개인적 측면은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역경 속에서 고갈된 체력과 정신적 문제가 취업에 있어 걸림돌이 되었다고 본다.

- 억양과 발음의 차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조어와 외래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 제약이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었다.

여성이면서 연령과 학력 수준에 따라 취업 전선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사회적지지 기반이 약하고, 인적 자본이 부족한 것과 취업에 필요한 직업 능력이 부족이나 기초 취업 역량의 부족이 경제활동을 저해시키고 취업에 대한 정보의 낮은 접근성 및 근로 여건의 열악함 등이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문화적 요인에서 볼 때 탈북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이 북한이탈주민을 노동 시장에서의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을 유발시켰다.

3) 마무리하면서~

- 2009년에 자유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 여성의 인권과 경제활동 피해 사례에 대한 제 겪었던 이야기 발표.

2025년 인권포럼,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실태와 대안

토론1 (발제1과 발제2) 김수연 전문연구원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발제1과 21. 하나원 교육, 그룹별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및 장기적 인생 설계 관점의 진로 상담·교육으로의 개선 필요

- 발제 “북향여성의 인권 실태와 대안”은 북향여성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한 데 기초하여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 제언 도출
 - 북향민, 대한민국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센터로 보내져 조사받은 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 진행
 - 하나원을 통한 북향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는 평화통일의 희망과 기대를 높이고, 통일 후 남북 간 융화를 위한 기초를 쌓는 과정
 - 현재 하나원 정착 교육은 개인별 선호 반영 부족하고 단기적 관점에서의 진로 상담 진행
 -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그룹별로 다변화하고 여성북향민들의 사회정착에 도움이 되는 진로 상담, 교육 진행 필요
 - 일부에서 하나원 교육은 실지 사회에 배출되어 현실에 부딪칠 때 그 교육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 하나원 퇴소 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센터 등을 중심으로 북향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강화 필요
2.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 인권”에서 북한 내 여성 인권침해, 차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며, 인권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지속성 있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경제 및 사회발전 담보
 - 발제에서 “기혼여성은 국가가 직장에 배정하지 않는다, 기혼여성은 전통적으로 정식 일자리에서 배제되어왔다”라고 언급, 북한 여성 고용에서 중요한 것

은 질 낮은 여성 일자리와 강제 배치

- 북한, 노동을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집단과 사회를 위한 의무로 강조하고 있으며
일할 능력을 갖춘 모든 주민의 직장 출근을 강제하는 분위기
- 여성들의 시장 활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시장통제는 곧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이며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침해
- 북한에서 남성들이 월급, 배급도 없이 무상봉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입당, 대학 졸업, 승진 등을
위한 비용)은 여성들이 시장활동 등에서 버는 돈으로 충당됨. 대신 여성은
자신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있고, 결국 여성의 노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하락, 남성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
들고 있음
-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및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2025년 인권포럼,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실태와 대안”

토론2 (발제 3과 발제4) 서경화 회장(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이탈주민 여성 인권 실태와 대안에 대한 포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48년8월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1989년9월9일~남한 정부 수립 세운지 20일 만에 김일성이 북한 정부 수립을 선포 하였습니다. 36년간 일제의 착취와 억압에서 하나님이 한반도 땅을 찾아주셨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두 정부가 나뉘어 남한 땅에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80년이 지나오는 오늘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저 북한 땅에는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식량도 없어 가족에게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여성들의 짐이 무거워 수명을 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특히 북한 여성들의 현재 상황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럼에서 나눈 소리들이 저 북한 고향 땅에도 들려서 여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 이런 노래가 있다. (母강반석 노래)

“싸리 나무 한가지는 꺾기쉽지만
아름들의 나무는 꺾지 못하리
여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 낸다오”

이 노래가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북한 사람들은 자기 굶주림보다 지도자들이 굶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밖의 세상에 대한 정보를 모른채 즉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인권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어온 것이 북한의 여성들입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죽음 후 더 열악해진 식량사정은 건잡을 수 없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놓았습니다.

어느 집에서 여자가 너무 굶주리다가 “여보 나 중국 다녀 올까?”하고 물으니 남편이 “가기만 해봐 보위부에 신고 할 것이다”라고 어리석은 행위를 합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늘의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는데 정작 멸망의 차를 타고 그냥 죽음의 미래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호세아서 4:6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처럼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존재조차 모르며, 결국에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며, 이 한 사람의 불

순종이 제사장 나라 제 2의 동방예의국이었던 저 북한 땅에 영원히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은 정말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나라이며 여성들이 고통이 가장 큼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 보겠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중국 땅에 넘어가 자신을 팔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탈출 해 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일상을 아무런 대책 없이 눈앞에서 바라보기만 해야만 하는 그 참담한 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팔려가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한 여성은 대한민국까지 오는 과정에 임신이 되었는데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015년도에 극심한 가뭄에 북한에 갑자기 비가 내려 산에 버섯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버섯을 많이 캐와 먹고 죽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그 여성들이며 대한민국에 와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최현옥 실장님의 <북한이탈주민 여성 정착 현황-가정실태 중심으로>의 두 번째 페이지에서 북한이탈 여성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어느 가정에 남:북=결혼=중국 자, 남한 자녀= 몇 달전 사망, 그런데 중국 자 아빠 없는 곳 보내 버리는 경우 여성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자 유무, 배우자 출신 지역,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등 가족 구조 및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으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남편의 자녀를 둔 여성 경우 자녀와 남편의 입국 문제로 갈등하기도 하며 시댁과 남편의 반대로 자녀를 데려오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에 있는 자녀의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에 있는 남편 데려와야 하는데 돈도 힘들지만 그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가 없는 상태라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남한 남편을 만난 경우의 예도 힘든 사건입니다: 결혼- 시모- 돈 요구- 남편- 늘 외도- 결국-이혼- 자녀 나눔- 대학 갈 때까지 양육비 ‘무’

북향여성들의 문화적 어려움의 예로 4페이지 세 번째 섹션 <탈북민 자녀 양육과 돌봄>에서 실제 내용을 보충합니다: 40대 여성 홀로 4살 어린 아들 키우는데 어느 날 길에 누워서 아이가 땀을 부려서 엉덩이 때렸더니 누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에 가야 하는데 말을 안들어 엉덩이 한 대 살짝 때렸다고 어린이 집에 가서 4살 어린 아들이 선생에게 말하여 결국 엄마는 또 경찰 조사 받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차별/ 무시당한 경험>실제 내용을 보충합니다. 2001년 입국하여 2002년 출판사 알바 자리를 소개 받을 때 일당 7만이라 했는데 6만5천원만 주길래 “왜 자르고 주냐?” 물으니 “중국에서 오지 않았냐?”고 합니다. 탈북 여성들이 정착하면서 가장 어려운 요인은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웬의 “상처입은 치유자”는 탈북민 기독교 사역자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탈북민 여성들은 정말 강합니다. 왜냐구요? 상처 속에서 상처를 딛고 살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문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 굳어진 상처를 풀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고향에 가서 상처 받은 자에 대한 치유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 삼국으로 돌면서 받은 상처 못지않게 더 많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배운 3대 각오가 필요 합니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그리고 얼어 죽을 각오로 탈북민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시면 우리에게는 북한 땅에서부터 받은 상처, 제 삼국들에서 받은 상처, 남한에서 받은 상처 겹겹이 쌓인 상처들 보다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신의 상태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역자로 환대하는 사역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평화드림포럼

전화: 02-6273-7202

팩스: 02-6273-7203

이메일: peacedreamforum@gmail.com

홈페이지: www.peacedream.org

주소: (우)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다모여빌딩(구 코오롱사옥) 201호

(사)화해평화연대

전화: 02-785-7994

이메일: waveofpeace@naver.com

홈페이지: <http://waveofpeace.or.kr/>

주소: (우)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10호(여의도동,
제일빌딩)